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2. 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4. 11. 18.

다. 상정일자 : 제27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4. 11. 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장애인사회보장과장

가. 제안이유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세척·소독, 대여, 안전교육 등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5. 4. 30. 자로 종료됨에 따라 보장구수리센터 위탁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2) 필요성

-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보장구 수리, 세척·소독을 통한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및 수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

- 1)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및 관리
- 2) 휠체어 등 수리 사업
- 3) 휠체어 등 대여 사업
- 4) 휠체어 등 세척·소독 사업
- 5) 휠체어 등 상담 사업
- 6) 휠체어 등 홍보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구분	내용	
소재지	마포구 성산로4길 35,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규모	전용면적 42㎡	
위치도		
비고	<p>※ 現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위탁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간: 2023. 5. 1. ~ 2025. 4. 30.(최초위탁일 2019. 2. 1.) - 운영기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 인 력: 수리기사 2명 	

○ 위탁기간: 3년(2025. 5. 1. ~ 2028. 4.30.)

○ 수탁자 선정방식: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선정(재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소요예산: 151,500천원(시비: 16,000천원, 구비: 135,500천원)

2)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4년 예산액	산 출 내 역		비고
목	세목				
계		151,500			
민간 이전	민간위탁금	151,500	1)인건비	79,000	구비 92% 시비 8%
		시 16,000	1)운영비	4,140	
		구 135,500	1)사업비	68,360	
			시	16,000	
			구	52,360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음
- 2)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1)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준수하여 민간위탁 진행
- 2) 2024년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성과평가 결과: 75.5점(재계약 가능)
- 3) 추진일정(안)
 -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재계약 계획 수립: 2025. 1월
 - 민간위탁 운영신청서 접수: 2025. 2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선정): 2025. 3월
 - 위탁 운영 개시: 2025. 5월

3. 검토보고 [장홍용 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세척·소독, 대여, 안전교육 등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5. 4. 30.자로 종료됨에 따라 보장구수리센터 위탁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의회는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어 관련규정과 상충됨이 없고,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보장구 수리, 세척·소독을 통한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및 수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위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관련법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